



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허가(신고)를 받아야 합니다!

근거법규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(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)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(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) 및 제5조(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)

허가(신고)를 받지 않고 간판을 설치하면?

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사업자, 광고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**1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1천만원 이하 벌금**의 벌칙처분이나 **5백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, 과태료**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.

영업주께서는 간판 설치 전에 본인 영업장의 간판이 허가(신고)를 받았는지 간판제작 설치업자에게 반드시 허가증(신고증명서)을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※ 만일 거부할 경우는 아래 관할 구청 담당부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세요?

포항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☎ 054-270-2363

포항시 남구청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 ☎ 054-270-6023

포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 ☎ 054-240-7023

☞ 포항시 아름다운간판달기 홈페이지(<http://sign.ipohang.org/>)



옥외광고물(간판) 허가·신고 안내

옥외광고물 허가(신고) 절차

- 허가(신고)대상 : 모든 옥외광고물
- 절차



옥외광고물 종류

- 고정광고물 : 가로형간판, 세로형간판, 돌출간판, 옥상간판, 지주이용간판
애드벌룬, 교통시설·교통수단이용광고물
- 유동광고물 : 현수막, 벽보, 전단, 입간판

이런 광고물은 안돼요!

- ▶ 지정게시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현수막 또는 벽보
- ▶ 무단살포 또는 차량투입·부착하는 전단
- ▶ 에어라이트광고물, 사회통념상 문제시 되는 청소년유해광고물



※ 현수막 및 벽보는 반드시 지정게시시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

지정게시시설 이용 안내는 포항시 위탁업체인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포항시지부(☎054-281-1790)로 문의하시기 됩니다.